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지원 등〉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9호)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71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식품접근성 정의 신설	4
2.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 마련 의무	8
3.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11
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1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15
4. 부칙(시행일)	20

I. 제안경위

1. 소병훈의원안(제2214539호)

가.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5.

다. 회 부 일 : 2025. 11. 26.

2. 임호선의의원안(제2215971호)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3. 복기왕의원안(제2216451호)

가.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소병훈의원안(제2214539호)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2. 임호선의원안(제2215971호)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3. 복기왕의원안(제2216451호)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Ⅲ. 검토의견

1. 식품접근성 정의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식품접근성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임호선의원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복기왕의원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현 행	소병훈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일부개정법 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 다. 1. ~ 8의3.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 ----- ----- -----. 1. ~ 8의2. (현 행과 같음) 8의3. “식품접근 성”이란 취약 계층이나 이 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 전하고 신선 하며 균형 잡 힌 식품을 쉽 게 구입할 수	제3조(정의) --- ----- ----- -----. 1. ~ 7. (현행 과 같음) 7의2. “식품접근 성”이란 지리 적, 경제적 요 인 등에 관계 없이 개인이 신선하고 안 전한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	제3조(정의) --- ----- ----- -----. 1. ~ 8의2. (현 행과 같음) 8의4. “식품접근 성”이란 취약 계층이나 이 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 전하고 신선 하며 균형잡 힌 식품을 쉽 게 구입할 수

현 행	소병훈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복기왕의원안
9. (생 략)	<u>있는 정책적 · 사회적 조 건을 말한다.</u> 9. (현행과 같 음)	<u>적 조건을 말 한다.</u> 8. ~ 9. (현행 과 같음)	<u>있는 정책적 · 사회적 조 건을 말한다.</u> 9. (현행과 같 음)

최근 농식품 유통이 기존의 도·소매 유통을 넘어 온라인 유통과 배송의 형태 등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매점·신선식품 접근성이 낮거나 온라인 유통 농식품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을 마치 물을 찾기 어려운 사막에 비유하여 일컫는 식품사막(Food Desert)이라는 용어 또한 사용되고 있음.¹⁾

예를 들어, 2020년에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²⁾에서는 전국 37,563개 행정리별로 판매·서비스시설 소재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행정리 내에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가 소재하는 비율은 각각 26.5%, 3.3%, 2.6%에 불과하여, 읍·면 내 타 행정리 혹은 읍·면 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025. 12., p. 3.

2) 참고로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농림어업총조사는 최근 2025년 12월에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아직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음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 행정리별 판매·서비스시설 소재 현황 】

(단위: 개, %)

구분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재래시장	대형마트
합계		37,563 (100.0)	37,563 (100.0)	37,563 (100.0)
행정리 내 소재		9,954 (26.5)	1,254 (3.3)	983 (2.6)
읍·면 내 소재		25,832 (68.8)	15,936 (42.4)	9,768 (26.0)
읍·면 외 소재	소계	1,777 (4.7)	20,373 (54.2)	26,812 (71.4)
	10분 미만	105 (0.3)	530 (1.4)	246 (0.7)
	10분~19분	759 (2.0)	6,254 (16.6)	4,365 (11.6)
	20분~29분	480 (1.3)	7,150 (19.0)	7,020 (18.7)
읍·면 외 소재	30분~39분	325 (0.9)	4,493 (12.0)	6,847 (18.2)
	40분~49분	59 (0.2)	958 (2.6)	3,512 (9.3)
	50분~59분	12 (0.0)	214 (0.6)	1,561 (4.2)
	60분 이상	37 (0.1)	774 (2.1)	3,261 (8.7)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재가공)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정의규정에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후의 의무·지원 등의 규정을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식품접근성의 정의에 따라 이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품접근성을 어떠한 조건까지로 포함하여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세 건의 개정안에서는 식품접근성을 크게 신체적, 경제적 및 지리적 요인에 따른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유를 ① 신체적 요인에 따라 이동이 불편하거나, ② 경제적 요인에 따라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③ 지리적 요인에 따라 생활권 내에서 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 중 신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조건은 동일한 생활권역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인적 조건인 반면,

지리적 요인에 따른 조건은 산간·도서지역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립되거나, 인구감소 등 수요 부족으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 지역 내에 식료품점 등이 운영되지 않는 등의 경우로서, 해당 생활권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식품접근성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대상의 범위를 해당 생활권역 내의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그 외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선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식품 판매업체 운영 지원, 이동판매 및 배송서비스 지원 등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적 조건(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임.

2.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 마련 의무

임호선의원안과 복기왕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임호선의원안 제7조제3항 신설, 복기왕의원안 제54조).

현 행	임호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생략) <u><신설></u>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와 식품 구매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u>영세 농업인</u>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 ----- -----<u>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u> ----- ----- ----- ----- ----- -----.

현행법 제7조³⁾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정책을 예시하고 있으나,

식품접근성 제고는 그 예시 중 ‘식품지원’이라는 넓은 범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절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주: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6. 7. 1. 시행)에서는 현행법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 있음⁴⁾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026. 1. 26. 확인

한편, 현행법 제5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 정책을 예시하고 있으나, 식품접근성 제고는 그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식품접근성에 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7조제1항

4)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절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임호선의원안은 현행법 제7조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② 복기왕의원안은 현행법 제54조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책과정에서 식품접근성에 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두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제고라는 동일한 사항을 각각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조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근성 제고가 둘 중 어느 목적에 보다 근접하여 어떠한 조를 개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만일 식품접근성 제고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목적인 것으로 보아 임호선의원안과 같이 현행법 제7조를 개정한다면,

현행법 제7조⁵⁾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정책을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정책의 예시에 식품접근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7조제1항

3.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소병훈의원안과 복기왕의원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6).

현 행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6(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제23조의6(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23조의6(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 행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 ----- ----- ---	----- ----- ----- ----- ----- ---
1. ~ 4. (생 략)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매환경 개선 지원</u>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u>
5. (생 략) ④ ~ ⑥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여부(2024. 12. 기준) 】

(단위: 개, %)

광역지자체	광역단위				기초단위			
	소계	수립	수립중	미추진	소계	수립	수립중	미추진
서울	1	1	-	-	25	1(서대문)	1(은평)	23
부산	1	1	-	-	16	-	-	16
대구	1	-	1	-	9	-	1(군위)	8
인천	1	1	-	-	10	-	1(서구)	9

광역지자체	광역단위				기초단위			
	소계	수립	수립중	미추진	소계	수립	수립중	미추진
광주	1	1	-	-	5	1(광산)	1(동구)	3
대전	1	1	-	-	5	2(유성대덕)	-	3
울산	1	1	-	-	5	-	1(울주)	4
세종	1	1	-	-	-	-	-	-
경기	1	1	-	-	31	29	1(양평)	1(과천)
강원	1	1	-	-	18	17	1(화천)	-
충북	1	1	-	-	11	9	2(음성단양)	-
충남	1	1	-	-	15	15	-	-
전북	1	1	-	-	14	12	2(남원순창)	-
전남	1	1	-	-	22	15	6	1(보성)
경북	1	1	-	-	22	21	-	1(울릉)
경남	1	1	-	-	18	13	5	-
제주	1	1	-	-	-	-	-	-
총계	17	16	1	-	226	135	22	69

※ 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지역먹거리계획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이 완료되었고,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었으며, 수립을 추진하지 않는 69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등에 해당하였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 제도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최근의 인구감소 및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식품사막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2제2항 또는 임호선의원안 제23조의8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먹거리계획에 관한 개정안을 복기왕의원안과 임호선의원안의 지원사업 규정과 함께 수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사업을 지역먹거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또는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음.

만약,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 개정안의 규정을 병합심사하여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임호선의원안과 복기왕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특히 임호선의원안은 5년 주기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2제2항, 임호선의원안 제23조의8 신설).

현 행	임호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 판매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식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배송서비스 지원 3. 고령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 행	임호선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신 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료품점 운영, 식료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와 식품접근성 지원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식품사막 및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⁶⁾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면, 농협·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의 지역 공동체가 이동식 차량과 인력을 운영하여 생필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찾아가는 이동장터” 프로그램 사업 구조 】

□ 기본 운영방안

- 운영재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의 **사업비 일부 활용**
 - (지자체) 이동식 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지역 공동체) **이동식 차량 및 인력 운영**
 - * 지역사회공동체는 농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
 - * 필수인력 외 부족한 인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범위 : **생필품을 판매·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거점과 식품사막 지역(배후마을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설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일부 재가공

임호선의원안과 복기왕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이동판매 및 배송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이 식품 판매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등이 수행됨에 따라 식품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지특회계-지역자율계정, 일반농산어촌개발(4180-360)

이 경우,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임호선의원안은 임의규정, 복기왕의원안은 의무규정 형식으로 규정의 차이가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그 수준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호선의원안 제23조의8제2항에서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예시로 ‘식료품점 운영’과 ‘식료품 판매 업체의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식료품점이나 이동판매차 등을 운영하는 것을 실행하기 어려울 경우, 복기왕의원안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호선의원안은 복기왕의원안과 달리 ①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식품접근성에 관한 사항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리별 판매·서비스시설 소재 현황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임호선의원안에 따른 5년 주기 실태조사 제도를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사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⁷⁾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4.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려는 것임(소병훈의원안·임호선의의원안·복기왕의원안 부칙).

소병훈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복기왕의원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병훈의원안은 법률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안 제23조의 6제3항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2027년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의 시작과 법률의 시행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센터에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소병훈의원안과 같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접근성 제고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임호선의의원안·복기왕의원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